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허 가 · 신 고 · 등 록 번 호				
승 계 사 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3) 게임물 관련 사업자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